

2016) 건축기사 4주완성 5차개정 3차 정오표[2016.8.17]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빨강색 글씨-수정된 부분)
292페이지 49번 해설	$G_x = A \cdot \bar{y} + A_2 \cdot \bar{y}_2$ $= (150 \times 15) \times 52.5 + (30 \times 45) \times 22.5 = 148,500 (\text{m}^3)$ $A = A_1 + A_2 = (150 \times 15) + (30 \times 45) = 3,600 (\text{m}^2)$ $\therefore \bar{g} = \frac{G_x}{A} = \frac{148,500}{3,600} = 41.25 \text{cm}$
364페이지 41번 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분포하중에 대한 지점반력은 하중과 구조물이 좌우대칭이므로 $V_A = V_B = \frac{wl}{2}$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M_C를 C점의 좌측 기준으로 풀이하면 $M_C = V_A \times \frac{l}{2} - \left(\frac{wl}{2} \times \frac{l}{4} \right) = \frac{wl}{2} \times \frac{l}{2} - \frac{wl^2}{8} = \frac{wl^2}{8}$

2016) 건축기사 4주완성 5차개정 2차 정오표[2016.2.29]

해당 페이지	교정전	교정후	비 고
[법규] 760	6. 건축물의 높이제한	하단참조	②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내용과 그림 삭제
	핵심PLUS [예]1	~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경우	최고 삭제
	핵심PLUS [예]2	삭제	문제 삭제
761	그림 위 [예외] 수정	하단참조	

해당 페이지	하단참조 내용
[법규] 760	<p>6. 건축물의 높이 제한</p> <p>1. 높이제한</p> <p>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(街路區域) :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(一團)의 지역을 단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·공고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도시·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㉢ 해당 가로구역의 상·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<p>※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2. 절차</p> <p>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(제8조)에 따른다.</p> <p>②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</p>
761	<p>[예외]</p> <p>1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m 이상의 도로(자동차·보행자·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,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, 녹지, 광장,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·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)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지구단위계획구역,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 ㉡ 중점경관관리구역(경관법) ㉢ 특별가로구역(건축법) ㉣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·공고하는 구역 <p>2.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(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)의 경우</p> <p>3.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</p>

2016) 건축기사 4주완성 5차개정 1차 정오표[2016.2.11]

페이지	교정전	교정후	비 고
[법규] 679	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	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	
693	다중이용건축물 정의... 문화 및 집회 시설(전시장, 동식물원)	①문화 및 집회 시설(전시장, 동식물원)	전시장 삭제
693	신설 추가	준다중이용건축물 ☞ 하단참조	법 신설(정의)
704	[표]속 [예외]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~	건설기술진흥법	
705	[표]속 좌측 4. 추가	4.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	법 개정(대상 추가)
708	[표]속 2. 점검대상에 추가	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	법 개정(대상 추가)
712	14번 해설 중...	①문화 및 집회 시설(전시장, 동식물원)	전시장 삭제
716	25번 해설 [표]속 4. 추가	4.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	법 개정(대상 추가)
724	[표]속 2. 연면적: 1,000㎡	연면적 : 500㎡	법 개정(*500㎡ 주의)
728	3)배연설비	☞ 하단참조	법 개정(대상 추가)
729	[표]속 최하단에 한줄 추가	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/호실간 경계벽 ☞ 하단참조	법 개정(대상 추가)
738	6.[표]속 옥상광장의설치..유흥주점	유흥주점 → 주점영업	
764	3)배연설비	☞ 하단참조	법 개정(대상 추가)
771	[표]속	☞ 하단참조준다중이용건축물	법 개정(대상 추가)
774	13번 해설..배연설비	☞ 하단참조	법 개정(대상 추가)
781	2. ※모니터링 대상 지정권자..	기타건축물:2년마다→4년마다	
781	핵심PLUS [예]2	☞ 하단참조	
790	[표] 수정	☞ 하단참조	내용 수정
829	[표] 속...용도지구명:방재지구	*방재지구	세분대상 *표기추가
834	[7] 입지규제최소구역.. 추가	☞ 하단참조	내용 추가
[부록]	과년도기출 법규문제 중 구조안전확인 대상	연면적 1,000㎡ → 500㎡ 으로 수정	법 개정(*500㎡ 주의)

※ 위의 내용 이외에 의문점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 www.inup.co.kr 건축기사4주완성 동영상강좌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해당 페이지	하단참조 내용														
693p 신설 (내용추가)	<p>※ 준다중이용 건축물</p> <p>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(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, 위탁시설, 관광 휴게시설,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 이상인 건축물</p>														
728p, 764p, 774p 수정부분(동일)	<p>3) 배연설비</p> <p>1.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것의 거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0㎡ 이상인 공연장, 종교집회장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(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),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,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은 제외),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탁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식장 [예외] 피난층인 경우</p> <p>2.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,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·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 제한 시설 [예외] 피난층인 경우</p>														
729p 수정부분	<p>① 경계벽 및 칸막이벽 구조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32 999 1474 1420"> <thead> <tr> <th>대상 건축물의 용도</th> <th>구획 부분</th> <th>구조 제한 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•다가구주택 •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</td> <td>각 가구간 또는 세대간의 경계벽 (발코니 부분은 제외)</td> <td rowspan="5">차음구조 및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 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.</td> </tr> <tr> <td>•학교의 교실 •의료시설의 병실 •숙박시설의 객실 •기숙사의 침실</td> <td>각 거실간의 칸막이벽</td> </tr> <tr> <td>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 시설</td> <td>호실 간 칸막이벽</td> </tr> <tr> <td>•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</td> <td>세대 간 경계벽</td> </tr> <tr> <td>•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</td> <td>호실 간 경계벽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 건축물의 용도	구획 부분	구조 제한 기준	•다가구주택 •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	각 가구간 또는 세대간의 경계벽 (발코니 부분은 제외)	차음구조 및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 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.	•학교의 교실 •의료시설의 병실 •숙박시설의 객실 •기숙사의 침실	각 거실간의 칸막이벽	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 시설	호실 간 칸막이벽	•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	세대 간 경계벽	•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	호실 간 경계벽
대상 건축물의 용도	구획 부분	구조 제한 기준													
•다가구주택 •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	각 가구간 또는 세대간의 경계벽 (발코니 부분은 제외)	차음구조 및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 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.													
•학교의 교실 •의료시설의 병실 •숙박시설의 객실 •기숙사의 침실	각 거실간의 칸막이벽														
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 시설	호실 간 칸막이벽														
•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	세대 간 경계벽														
•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	호실 간 경계벽														
771p 수정부분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32 1507 1449 1771"> <thead> <tr> <th>관계전문기술자</th> <th>건축물의 규모</th> <th>용도 및 협력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건축구조기술사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6층 이상 건축물 •특수구조 건축물 •다중이용 건축물 •준다중이용 건축물 •지진구역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</td> <td>구조안전의 확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관계전문기술자	건축물의 규모	용도 및 협력사항	건축구조기술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6층 이상 건축물 •특수구조 건축물 •다중이용 건축물 •준다중이용 건축물 •지진구역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	구조안전의 확인								
관계전문기술자	건축물의 규모	용도 및 협력사항													
건축구조기술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6층 이상 건축물 •특수구조 건축물 •다중이용 건축물 •준다중이용 건축물 •지진구역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	구조안전의 확인													

해당 페이지	하단참조 내용										
781p 수정부분	<p>[예] 특별건축구역 안의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 제출기간은? (단,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까지의 경우)</p> <p>가.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미만마다 나.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미만마다 다. 사용승인일로부터 4년 미만마다 라.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마다 ∴ 답 : 라</p>										
790p 수정부분	<p>1)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직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32 562 1465 712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설 치</th> <th>분쟁조정업무의 범위</th> <th>위원의 수</th> <th>임 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중앙)삭제 건축분쟁전문위원회</td> <td>국토교통부</td> <td>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</td> <td>15인 이내 (위원장·위원장 각 1명 포함)</td> <td>3년 (공무원 제외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설 치	분쟁조정업무의 범위	위원의 수	임 기	(중앙)삭제 건축분쟁전문위원회	국토교통부	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	15인 이내 (위원장·위원장 각 1명 포함)	3년 (공무원 제외)
구 분	설 치	분쟁조정업무의 범위	위원의 수	임 기							
(중앙)삭제 건축분쟁전문위원회	국토교통부	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	15인 이내 (위원장·위원장 각 1명 포함)	3년 (공무원 제외)							
834p 부분(내용추가)	<p>㉑ 입지규제최소구역</p> <p>1. 지정권자 : 국토교통부장관</p> <p>2.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말한다.</p> <p>3.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</p> <p>①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② 건축물의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사항 ③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④ 용도지역·용도지구, 도시·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⑤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</p>										